

울산 중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2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위생·영양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. 12. 31일자로 만료되며,
-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·관리되었으나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「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」으로 확대·설치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,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중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
나. 근거법규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
- 2024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 (승인 및 동의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2항,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식품관련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 필요
- 관내 등록된 142개소의 어린이급식소 및 신규 사회복지급식소 등록·관리를 위한 위생·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, 위생·영양 컨설팅, 안전한 급식 제공, 대상별 교육 등 조직적 운영 필요
- 이에 따라,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으로 민간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

라. 위탁사무의 내용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,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
-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마. 위탁대상 개요

시설명	인력규모	위탁기간(3년)
울산 중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	11명 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8)	2025. 1. 1.~ 2027. 12. 31.(3년)

바. 수탁기관 선정 방법

-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

3. 추진일정

-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: 9월~10월
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: 11월
- 위·수탁 계약 체결: 12월

4. 참고사항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련 근거법규
- 울산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

붙임1

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련 근거법규

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

제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“급식소”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
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·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
3.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
4.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

② 삭제 <2023. 8. 8.>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

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
4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
2.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.

□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(2024. 1.)

○ Part II.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(24 위탁 계약 및 재위탁)

2.4 위탁 계약 및 재위탁

○ 위탁 계약 체결

-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(법인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.

○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

-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은 수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,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.
-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,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.
 - * 전문지역센터제로 지정된 경우 재위탁 평가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.
-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'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.
-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.
 - * 다만, 직원채용 공고 실시여부, 근무기간 연계 등은 지자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□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6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붙임2 울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

□ 시설 개요

- 소재지: 중구 종가8길 66,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
- 면적: 58㎡(사무실)
- 개소일: 2014. 12. 1.
- 운영인력: 10명(센터장1, 팀장2, 팀원7)
- 운영예산: 500,000천원(국 50%, 시 25% 구 25%)
- 위탁현황
 - 수탁기관: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: 이재신)
 - 최초위탁일: 2014. 11. 17.
 - 재계약기간: 2023. 1. 1.~2024. 12. 31.(2년)
 - 위탁내용: 울산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□ 주요사업

- 영양사 없는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
- 어린이, 학부모, 보육교직원,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대상 위생·영양 교육자료 및 식단개발 보급
- 등록관리시설

(단위: 개소, 인원)

계	일반회원					기본회원		
	소계	어린이집	유치원	지역아동센터 등	사회복지시설	소계	어린이집	유치원
142개소 (5,410명)	118개소 (3,374명)	95개소 (2,816명)	7개소 (233명)	13개소 (249명)	3개소 (76명)	24개소 (2,036명)	4개소 (410명)	20개소 (1,626명)

※ 일반회원: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

※ 기본회원: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 급식소